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CONTENTS

- I.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 II. 부정청탁의 금지
-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 V. 사례 및 판례
- VI. 맺음말



입법목적 및 내용

입법목적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허가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2호, 제3호]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
-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 공문을 통한 공개적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적용대상
- 다만,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 전달 시 예외사유에 해당

인사 청탁

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증양부처 공직자 A



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제재대상아님



보조금 청탁



위법사항 목인 청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1.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체 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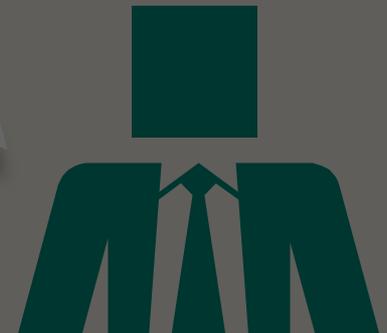
과태료 1천만원



3.

안됩니다!

담당 소방관 C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직무관련성 **有**

직무관련성 **無**

형사처벌

형사처벌

100만원

과태료

제재 대상 아님

이하

초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

- 공공기관 이사회 종료 후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 허용
- 기관장이 직원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및 경조사비 : 허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가액 요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란?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선물

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경조사비

결혼과 장례에 한정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3호, 제4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

-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 직무 내용 및 당사자의 관계
-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 (예시) 서면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O, 사실혼 배우자 X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5호]

직원상조화·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

- 친목회 등의 요건 :
 - ①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 ② 의사결정 기관·대표자 존재
 - ③ 정관·회칙 등 내부규정 존재
 - ④ 구성원 전체의 회비 부담
-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허용
- 친목회 회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전별금 제공 : 불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6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공식적 행사 : 행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참석대상의 개방성, 행사의 공개성, 공식적 초청이 중요
- 통상적 범위 : 다른 유사·동종 행사 제공 수준, 정상적 비용처리절차
- 일률적 제공 : 역할별 합리적 차등 O, 특정 개인·집단에만 제공 X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7호]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판단기준 : 기관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
→ (판례) 회사 로고가 자수된 수건(2,500원)은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기부금품법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품 수수
-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학칙 및 그 세부규정
→ (예시) 공무원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사회상규 : 단순한 관행만으로는 부족,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 판단기준 : 당사자간 관계, 직무관련성 내용, 금품내용·가액, 수수 시기·장소, 수수 경위 등
 - 결혼식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
 - 공연 등 취재기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프레스티켓
 - 학생 단체 인솔교사의 무료입장 등

양벌규정



단,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 다하면 사업주 면책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외부강의등

직무 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등 신고

“대가 받지 않아도” 신고

“사전” 신고

사전신고 곤란하면
2일 이내 사후 신고

국가지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외부강의등의 범위?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회의 등이 아닌 용역·자문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분	사립학교, 언론사	장관급 이상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제한 없음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외부강의등 1회 판단기준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주제)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 가능

IV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공직자등의 대응방법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거절·반환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불이익조치 금지

해고, 전보, 감봉 등
금지

불이익조치하면
형사처벌

책임감면

형벌, 과태료,
징계 등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보상금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

대상가액의 4~30%
최대 30억원



포상금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

최대 2억원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